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8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8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개선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에 보행시설물(계단, 다리 등) 추가 (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실외 운동시설” 을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 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바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옥외주차장” 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자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너목 부터 머목 신설)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안 제9조제3항)
- 준용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14조)
- 지원대상 사업 정비 및 추가에 따른 지원비율, 평가항목,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2) 주요 내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에 보행시설물(계단, 다리 등) 추가 (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실외 운동시설” 을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 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바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옥외주차장” 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자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너목 부터 머목 신설)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안 제9조제3항)
- 준용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14조)
- 지원대상 사업 정비 및 추가에 따른 지원비율, 평가항목, 평가기준

## 변경(안 별표 1)

### 다. 검토의견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및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설 대상사업 중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외벽 보수(도색)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 봄.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단지별 중복지원 및 수의계약 지양, 사업선정 시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며, 해당부서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